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의안번호	관련 제265호
의결년월일	99. 12. 27 (제75회)

제 출 일 : 1999. 12. 24

제 출 자 : 조례정비특위위원장

I. 활동개요

1. 활동목적

-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그 동안 부천시에서 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각종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분석을 통하여
-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례나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등 불합리한 조례를 발췌하여 시민생활 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개정함으로써,
-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구현하고 사회전반의 개혁의지와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욕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함.

2. 활동방침

- 상위법령의 정비로 사문화된 조례 폐지
- 행정 및 사회환경에 비추어 불 때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는 조례는 폐지
- 동일한 성격의 조례가 별개로 되어있는 2건 이상의 조례 등을 통합함
- 지역현실 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 등의 개정
-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조례 개정
- 시민편의 위주의 조례 개정 및 제정
- 부천시 자치법규의 위계체계 정비(법규의 상호관계)
- 각 위원회 조례 중 유사중복 위원회, 운용되지 않는 위원회 정비

3. 활동기간 : 99. 1. 4~99. 12. 31(당초 99. 6. 30일에서 6개월 연장)

4. 특별위원회 구성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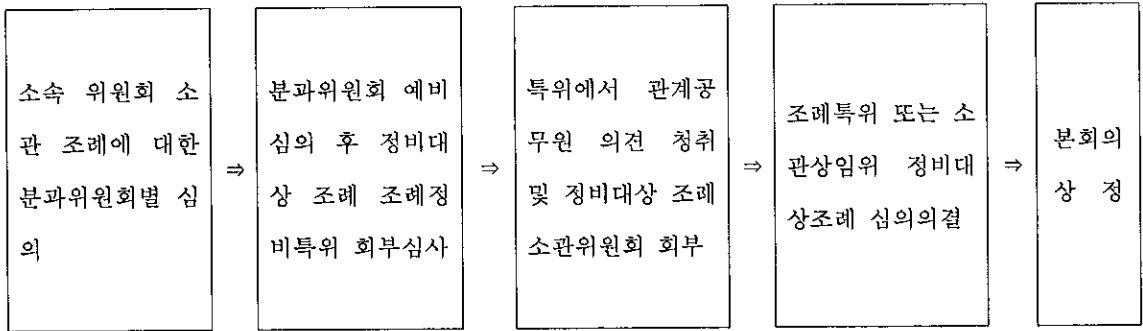
- 구성인원 : 9명(위원회별 3인)
- 위 원 장 : 한병환 의원(행정복지위원회)
- 간 사 : 이강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 위 원
 - 기획재정위원회 : 강진석, 최혜영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박종신, 한기천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 김대식, 김삼중, 류중혁 의원

5. 조례정비 활동개요

○ 분과위원회 구성(3개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별	분과장	위원	비고
기획재정위원회	강진석	강진석, 이강인, 최혜영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종신	박종신, 한기천, 한병환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삼중	김대식, 김삼중, 류중혁 의원	

○ 활동 흐름도



○ 심의대상 조례 : 191건(98. 12월 20일 현재 발효 중인 조례)

-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 51건(의회 9건 포함)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 79건
-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 61건

○ 정비조례 유형

구분	제정조례	개정조례	폐지조례	수정조례	통합조례	비고
내용검토	현행 없는 조례를 신규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개정 • 전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달성이나 실효성이 없는 조례 •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구변경 • 문안추가 • 제명변경 • 조항분할 	유사조례 통합·폐합 효율성 증진	

○ 중점정비 착안사항

구 분	세 부 착 안 사 항	비 고
제정범위 및 법규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사무(고유,단체위임)범위 밖의 사항 포함여부 ○ 상위법과 조례와의 저촉여부 ○ 법률이 개정되어 사문화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방치한 조례 ○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이탈한 조례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개정, 폐지의 필요성, 시기 등 검토 ○ 시민에 미치는 기대효과 ○ 현조례가 과대, 과소하지 않고 적절한가 등 	
제정 등 부담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가 검토 ○ 형평의 원칙에 맞는가 여부 ○ 새로운 제정부담이나 제정을 고려치 않는 조례 여부 	
시행에 따른 마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될 경우 마찰이나 문제점 검토 ○ 정비될 경우 주민의 민원유발 여부 	
규정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내용이 어렵고 이해하기 곤란한 것은 없는지 ○ 위임사항이 광범위하여 단체장의 재량 행위 남용이 없는지 여부 ○ 조례에 규정할 내용을 시행규칙에 위임 여부 ○ 1개의 조례를 2-3개로 분할 제정한 조례 여부 	

○ 일정별 활동계획

기 간	항 목	내 용	주 관	비고
99. 1. 4~ 99. 2. 28	○부천시 전체 조례에 대한 기초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과위원회 위원별 소관조례에 대한 조사·연구 및 심의 •정비대상조례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과위원회 위원 •분과위원회별 	
99. 3. 1~ 99. 3. 31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정지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관 상임위 심사 회부 •특위회부 대상조례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과위원회별 	
99. 4. 1~ 99. 11.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 마무리 작업 ○심의확정된 조례안 본회의 상정 ○신규 조례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회부된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특위 심의 →관계공무원 의견청취 •시민여론 수렴 및 필요시 공청회 개최 •정비대상조례 본회의 상정 최종 확정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조례 제안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례정비특별위원회 	
99. 12.1~ 99. 12. 27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회의 보고 		

6. 주요활동방법

○ 회의운영

- 정비대상조례 발췌 및 관계공무원 출석 질의·응답
- 조례안 관련 자료검토 및 심사의결

○ 설문조사 및 외부전문가 초청교육

- 조례정비에 따른 설문서 배부 의견수렴

- 조례제정에 따른 실무교육 및 타자치단체에서 발굴한 조례와 규제정비 자료 사례발표 등을 통한 조례정비 실무 습득

II. 주요활동 내용

1. 조례특위 활동상황

○ 제1차 회의

- 일 시 : 1998. 12. 24(목)
- 참 석 : 특위위원 9명
- 주요내용 : 위원장, 간사 선임(위원장 : 한병환 의원, 간사 : 이강인 의원)

○ 제2차 회의

- 일 시 : 1999. 1. 26(화)
- 참 석 : 특위위원, 정책기획실장
- 주요내용
 - 규제개혁위원회의 그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보고 청취
 - 특별위원회 분과장 선임 및 향후계획 토의 등

○ 제3차 회의

- 일 시 : 1999. 2. 8(월)
- 참 석 : 특위위원, 총무과장 외 5명
- 주요내용 : 폐지 또는 개정키로 확정된 조례에 대한 보고 청취
 - ※ 부천시세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외 9건

○ 제4차 회의

- 일 시 : 1999. 2. 9(화)
- 참 석 : 특위위원, 시민복지과장 외 7명
- 주요내용
 - 폐지 또는 개정키로 확정된 조례에 대한 보고 청취
 - ※ 부천시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 외 11건
 - 세미나 개최계획 토의

○ 건의 및 지시사항

-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정비된 조례 외에 자체적으로 정비할 모든 조례는 재검토하여 조례정비특위 기간 중 수시로 보고 요망
- 행정규제를 완화함에 있어 건수 위주에서 탈피하여 시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를 발굴하여 보고 요망

- 규제에 강제성이 있다고 하나 필요성 여부를 깊이있게 검토하여 개정여부를 판단할 것.
- 조례안이 곧 시민의 규제 대상임을 깊이 인식하고 안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타법에 저촉여부를 심도있게 판단한 후 개정할 것이며 차후 시행정에 미치는 사항도 검토하며 조례를 정비함에 있어 조례에 따른 부칙, 규칙 등도 모두 검토하기 바람.

○ 제5차 회의

- 일 시 : 1999. 2. 25(목)
- 참 석 : 특위위원
- 주요내용
- 분과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 세미나 개최계획 확정
- 부천시 각종 위원회 위원에 대한 설문서 조사방법 논의

○ 제6차 회의

- 일 시 : 1999. 5. 28(금)
- 참 석
- 특위위원
- 시민복지과장, 건축과장,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국제통상담당
- 주요내용 :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를 건 외 2건 심의 의결

○ 제7차 회의

- 일 시 : 1999. 6. 26(토)
- 참 석 : 특위위원, 회계과장, 예산담당, 법무담당
- 주요내용
-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를 건 심의 의결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안 의결
- ※ 당초 99. 1. 1-6. 30 → 99. 1. 1-12. 31일로 연장

○ 제8차 회의

- 일 시 : 1999. 7. 29(토)
- 참 석 : 특위위원, 시민복지과장
- 주요내용 : 부천시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를 건 심의

○ 제9차 회의

- 일 시 : 1999. 9. 30(목)
- 참 석 : 특위위원, 총무과장
- 주요내용 : 부천시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를 건 심의의결

○ 제10차 회의

• 일 시 : 1999. 10. 27(수)

• 참 석

- 특위위원

- 시민복지과장, 시 사회담당, 시·구·동 직원 6명, 자원봉사센터 직원 1명

• 주요내용

- 부천시생계보호특별자원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회 건

-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회 건 심의

○ 제11차 회의

• 일 시 : 1999. 11. 9(화)

• 참 석 : 특위위원, 시민복지과장, 사회담당

• 주요내용 :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회 건 심의의결

○ 제12차 회의

• 일 시 : 1999. 12. 24(금)

• 참 석 : 특위위원

• 주요내용 : 조례정비특위 활동결과 보고

2. 주요 추진사항

○ 조례제정실무 및 전국 특색조례 100선 강좌 실시

• 일 시 : 1999. 3. 11(목) 16:00

• 장 소 : 의회 소회의실

• 참석인원 : 53명

- 의 원 : 13명

- 시 실·과장 및 실무자 : 40명

• 강 사

- 김성호(행정자치부 입법추진자문위원)

- 최동규(지방자치실무연구소 선임연구원)

• 주요내용

- 조례제정실무강좌 : 자치입법권의 의의, 법령의 위계체계 등

- 전국 특색조례 100선 강좌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조례 비교설명

○ 조례정비신고센터 운영

• 기 간 : 1999. 2~6월

• 설치장소 : 부천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신고방법 : 신고센터에 인터넷, FAX 또는 우편, 전화 접수
- 홍보물 제작 : 조례정비신고센터 운영 안내서 및 의견서
- 제작매수 : 각 5,000매
- 배부대상 : 시, 구, 동 민원실, 직능단체 등
- 소요예산 : 300,000원
- 조례정비에 따른 부천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설문서 조사
 - 조사기간 : 1999. 3~4월(2개월 간)
 - 조사대상 : 부천시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민간인 235명
 - 조사방법 : 설문서 우편발송
 - 조사내용
 - 위원회 회의개최 회수, 전문성 여부
 - 위원회의 재정비 필요성 여부 및 회의자료 교부시기
 - 위원회 의견의 시행정 반영 여부
 - 응답결과
 - 발송 : 235명
 - 응답 : 55명
 - 응답률 : 23.4%
 - 설문조사서 세부 분석결과 : 응답자 중 80% 이상이 위원회의 계속 존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위원회의 설치 목적대로 행정에 반영이 잘 되고 있다고 응답함.
 - ※ 설문서 조사결과 분석보고서 : 별지 참고사항
- 다른 자치단체 우수·특색조례 발췌검토
 - 기 간 : 1999. 3~4월(2개월 간)
 - 검토대상 : 충청남도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 외 11종
 - 검토방법 : 발췌안 시 관련부서에 통보 제정여부 타당성 검토
 - 검토내용
 - 우리 시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는 그 사유 검토
 - 제정이 필요한 조례는 보다 발전적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 타시·군·구의회 의원 조례정비특위 방문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 일 시 : 1999. 4. 28(수)
 - 방문인원 : 8명(조례정비특위위원 6명, 공무원 2명)
 - 방문내용

-부천시 조례정비 추진현황 및 자료수집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 현황 파악

-북사골문화센터 외 1개소 시설견학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 일 시 : 1999. 10. 4(월)

• 방문인원 : 11명(조례정비특위 위원 9명, 공무원 2명)

• 방문내용

-부천시 조례정비 추진현황 및 자료수집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우수사례 의견교환

III. 추진실적

1. 정비 총괄

구 분		검토건수	정 비 건 수			
			소 계	위원회 회부	조례특위 제안	기 타
계		250	39	22	7	10
조례 정비	개정·폐지	191	25	22	3	
	제 정	4	4		4	
위원회 정비		55	10			10

2. 정비 내용

가. 조 례 : 29건

구 분	정비건수	제 정	부분개정	폐 지	기 타
계	29	3	20	5	1
위원회 회부	22		17	5	
조례특위 제안	7	3	3		1 (보류 중)

나. 위원회 : 10건(폐지 5건, 통폐합 5건)

3. 조례정비실적(건별)

연번	조례안건명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소관위원회			본회의			비고
				위원회	상정일	결과	상정일	처리일	결과	
1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99. 4. 2	기획재정	4. 13	수정의결	4. 15	4. 15	수정가결	제70회 임시회
2	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시장	99. 4. 2	기획재정	4. 13	원안의결	4. 15	4. 15	원안가결	"
3	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99. 4. 2	기획재정	4. 13	원안의결	4. 15	4. 15	원안가결	"
4	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	시장	99. 4. 2	기획재정	4. 13	원안의결	4. 15	4. 15	원안가결	"
5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99. 4. 2	기획재정	4. 12	원안의결	4. 15	4. 15	원안가결	"
6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99. 4. 2	기획재정	4. 12	원안의결	4. 15	4. 15	원안가결	"
7	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시장	99. 4. 2	기획재정	4. 13	원안의결	4. 15	4. 15	원안가결	"
8	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시장	99. 4. 2	행정복지	4. 12	원안의결	4. 15	4. 15	원안가결	"
9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99. 4. 2	행정복지	4. 12	원안의결	4. 15	4. 15	원안가결	"
10	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99. 4. 2	행정복지	4. 12	원안의결	4. 15	4. 15	원안가결	"
11	공설도지사용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시장	99. 4. 2	행정복지	10. 9	원안의결	10. 12	10.12	원안가결	제73회 임시회
12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99. 4. 2	행정복지	4. 13	원안의결	4. 15	4. 15	원안가결	제70회 임시회
13	축택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99. 4. 2	행정복지	4. 13	원안의결	4. 15	4. 15	원안가결	"
14	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99. 4. 2	행정복지	4. 12	원안의결	4. 15	4. 15	원안가결	"
15	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시장	99. 4. 2	건설교통	4. 12	원안의결	4. 15	4. 15	원안가결	"

연번	조 례 안 건 명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소관위원회			본 회 의			비 고
				위원회	상정일	결 과	상정일	처리일	결 과	
16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시 장	99. 4. 2	건설교통	4. 10	원안의결	4. 15	4. 15	원안가결	제70회임사회
17	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시 장	99. 4. 2	건설교통	4. 12	수정의결	4. 15	4. 15	수정가결	"
18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시 장	99. 4. 2	건설교통	4. 12	원안의결	4. 15	4. 15	원안가결	"
19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시 장	99. 4. 2	건설교통	4. 12	원안의결	4. 15	4. 15	원안가결	"
20	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강진석 의원 외 3인	99. 5. 28	조례특위	5. 28	원안의결	7. 8	7. 8	원안가결	제71회 임사회
21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 관한조례안(제정)	박종신 의원 외 2인	99. 5. 28	조례특위	5. 28	원안의결	7. 8	7. 8	원안가결	"
22	조경관리조례안(제정)	김대식 의원 외 2인	99. 5. 28	조례특위	5. 28	수정의결	7. 8	7. 8	원안가결	"
23	결산감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최해영 의원 외 3인	99. 6. 26	조례특위	6. 26	원안의결	7. 8	7. 8	원안가결	"
24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시 장	99. 8. 20	건설교통	8. 26	원안의결	8. 27	8. 27	원안가결	제72회 임사회
25	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시 장	99. 8. 20	건설교통	8. 25	원안의결	8. 27	8. 27	원안가결	"
26	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 조례개정조례안	류중혁 의원 외 3인	99. 9. 30	조례특위	9. 30	원안의결	10. 12	10. 12	원안가결	제73회 임사회
27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안(제정)	김삼중 의원 외 4인	99. 10. 27	조례특위	11. 9	원안의결	11. 12	11. 12	원안의결	제74회 임사회
28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시 장	99. 11. 2	건설교통	11. 10	원안의결	11. 12	11. 12	원안의결	제74회 임사회
29	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안(제정)	한기천 의원 외 3인	99. 7. 29	조례특위	7. 29					보류 중

4. 조례정비 세부내역

연번	조례안건명	정비유형	주요골자
1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닉재산 신고시 인감증명서와 각서제출 조항 삭제 ○ 행정재산 사용허가시 조건 중 사용허가표지부착 조건 삭제 ○ 청사의 설계시 설계의 기준 및 규모에 대하여 정한 사항 중 제47조2, 3, 5, 6, 7항 삭제 ○ 청사건축시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하는 조항 삭제
2	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법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기준, 징수, 통지, 이의신청 등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 폐지
3	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위반내용, 가스공급의무 중 허가받은 공급지역 외의 지역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경우를 삭제
4	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시에서 개설 운영하는 정기시장이 없고 우리 시 여건상 앞으로도 시장 개설 운영계획이 없으므로 폐지
5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에게 건축물에 대한 변경사항 신고의무규정 삭제
6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인의 승계시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천하도록 되어있는 의무규정 삭제
7	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으로 농가자체 보유 농기계로 농작수행에 어려움이 없으며 또한 시에서 보유하고 있던 농기계 폐기처분으로 조례 폐지
8	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수준의 향상과 마을기금 조성의 필요성이 줄어들어 본 조례가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어 폐지
9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마을과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규정을 삭제

연 번	조 례 안 건 명	정 비 유 형	주 요 내 용
10	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	○ 영세민 임대주택 입주자의 정기적금가입 의무사항과 정기적금 연체시 임대조항삭제
11	공설묘지사용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폐지	○ 상위법 저촉으로 부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 폐지에 따른 사용관리조례 폐지
12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	○ 현재 보건소에는 입원실이 없으므로 동조례에 규정한 입원서약서 제출 및 입원 보증금 예납조건 삭제
13	축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	○ 국고보조금이 50% 미만일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은 동조례 제2조 규정에 배치되므로 삭제
14	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	○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규제 폐지 및 완화
15	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폐지	○ 국토이용관리법상 부천시 전 구역이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며 우리 시에는 취락지역이 없어 현실성이 없는 조례로 폐지
16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	○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명확히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동조례 제4항 배수설비의 구조 삭제
17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법 조항 및 용어 정리 ○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업자에 대한 보고의무규정을 폐지하고 봉투판매대금납부를 시금고에서 금융기관으로 완화
18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	○ 동조례 제8조의 "보고 및 검사 등" 항목의 내용 중 보고 사항 삭제
19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	○ 상위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규제조항 삭제
20	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	○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을 해외교포, 타시·군 인사까지로 확대함
21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정	○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연 번	조 례 안 건 명	정 비 유 형	주 요 내 용
22	조경관리조례안	제정	○ 도시녹화경관의 조성을 위하여 조경시설 등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녹지를 보호하고 새로운 녹지를 육성
23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	○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토록 규정
24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	○ 상위법 중 일부조항 폐지로 조례 제3조(별표)상의 굴착공사 시행자의 착공 전 주요 매설물 설치여부 확인의 규정을 삭제
25	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개정	○ 현행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에 관한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에 대한 노상주차장 사용을 허용
26	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개정	○ 의회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함. ○ 전문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여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위원회 이외 일반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도록 함.
27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안	제정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을 정하여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백히 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토록 함. ○ 센터의 운영은 시에서 하되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시책수립, 봉사단체의 지원·육성을 기타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둠. ○ 센터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규정
28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	○ 상위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규제조항 삭제
29	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안	제정	○ 노령·연소·질병·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생활보호법 등에 의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생계보호 특별지원을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5. 위원회 정비 실적

□ 폐지 및 통합위원회(통합 5건, 폐지 5건)

위 원 회 명	폐지 및 통합 내용	관련부서	비 고
지방청소년실무위원회	지방청소년위원회와 통합	체육청소년과	
주요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와 통합	기획예산과	
고용대책협의회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와 통합	실업대책총괄과	
체비지대부료부과심의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와 통합	도 시 과	
재활용추진협의회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와 통합	청소사업소	
불가대책위원회	폐 지	기업지원과	
불가대책실무위원회	폐 지	"	
노사화합지원협의회	폐 지	실업대책총괄과	
지방고용심의위원회	폐 지	"	
모자복지위원회	폐 지	여성복지과	

IV. 종합검토의견

-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5,000여 건의 규제를 한꺼번에 폐지키로 한 것은 정부수립 이후 획기적인 일이며, 이와 같은 개혁의 본질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공무원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시민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데 있다 하겠음.
- 우리 시의회에서도 99. 12. 21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례는 물론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조례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불합리한 조례들을 대대적으로 발굴하여 시민들의 생활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하고
- 또한 시민편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새로운 조례를 발굴하여 제정하는 등 의욕적인 조례정비활동을 하였음.
- 본 특위에서는 우선적으로 부천시에서 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191건의 조례를 검토하여 정비키로 하고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행정규제 정비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확인 및 의견청취 등을 거쳐 조례정비의 방향과 대안을 분석하여 개정하였으며,

-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정비활동을 심도있게 펼치기 위해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조례실무 강좌, 전국특색조례 100선 강좌를 실시하여 조례정비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였음.
- 또한 부천시의 조례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함에 있어 시민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필요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규칙 등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새로운 것을 발굴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조례정비센터”를 설치하여 홍보물 5,000매를 제작 시·구·동 민원실 및 19개 직능단체에 배포하였으며, 반회보, 복사골소식, 유선방송, 지방언론지, 부천시넷 등에 홍보하여 시민으로부터 조례제정이나 개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음.
- 조례정비특위의 착안사항으로는 부천시에 55여 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유명무실하고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통폐합 등 위원회를 정비코자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부천시 각종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중 민간인 235명에게 설문서를 우편발송하여 설문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 위원회가 설치목적에 부합되며 전문성이 있다고 응답한 위원이 86%였으며
 - 위원회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자보다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자가 88%로 많았음.
 - 또한 소속된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있다고 응답한 위원은 5명으로 응답자 중 9%이며 위원회가 설치목적대로 위원들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되고 있다는 위원은 43명으로 75%임
- 따라서 위원회 정비는 대다수위원이 계속 존치하자는 의견이었으나, 일부 위원회는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99년 1월 조례정비특위에서 집행부에 위원회 정비를 강력 요구함에 따라 유명무실한 위원회 5개를 폐지하고 유사기능의 위원회 5개를 통폐합하였음.
- 위원회 정비 추진상 문제점은 위원회가 상위법령이나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유사기능 위원회 통폐합의 경우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 인원규정 등에 의거 정비에 어려움이 있으며, 유명무실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는 폐지되어야 하나 상위법령의 근거로 설치되어 있어 정비에 한계가 있음.
- 금년도의 경우 20개 위원회가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결국 법령이나 조례를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라도 실질적인 심의·의결기구로서 활동이 없을 경우 과감하게 폐지·통합하는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본 특위의 성과로는 조례실무강좌, 특색조례 100선 강좌를 토대로 25건의 조례를 개정·폐지하고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지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등 4건의 조례를 제안하여 이 중 3건은 공포 시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1건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로 인한 중복의 부담이 있어 시행령 및 세부규칙 제정 후 해당상임위에서 다루기로 결정하였음.

V. 사진으로 본 특위활동

♣ 조례정비특위 위원 소개 ♣

위원장



한병환 의원

간사



이강인 의원

위원



강진석 의원



최혜영 의원



박종신 의원



한기천 의원



김삼중 의원



김대식 의원



류중혁 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 일 시 : 99. 1. 26 ~11. 9(11회)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특위 위원 9명
해당실·국·과·소장
- 내 용 : 조례안 심의 해당부서장
질의, 답변, 의견청취



조례제정 실무 및 전국 특색조례 100선 강좌



- ☞ 조례제정 실무강좌
- 일 시 : 99. 3. 11(목) ~ 16:00 - 19:00
- 장 소 : 의회 소회의실
- 참 석 : 53명
 - 의원 13명
 - 시·실·과·소장 실무자 40명
- 강사
 - 김성호(행자부 입법추진 자문위원)
 - 최동규(지방자치실무연구소 선임연구원)
- 내용 : 조례제정 실무강좌 전국 특색조례 100선 강좌



☞ 전국 특색조례 100선 강좌

타시·군·구의회 의원 방문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 일 시 : 99. 4. 28(수)
- 방문인원 : 8명
 - 조례정비특위 위원 6명
 - 공무원 2명
- 내 용
 - 부천시 조례정비추진현황 및 자료수집
 -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 현황 파악
 - 시설 견학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 일 시 : 99. 10. 4(월)
- 방문인원 : 11명
 - 조례정비특위 위원 9명
 - 공무원 2명
- 내 용
 - 부천시 조례정비추진현황 및 자료수집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우수사례 의견교환

부천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설문서조사결과

○ 이 보고서는 부천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부천시의 조례 중 시민생활에 불편부당한 조례 등은 개정하고 또한 새로이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조례로 제정코자

○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부천시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설문서를 우편 발송하여 설문서에 응답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임.

조사개요

- 조사기간 : 99. 3. 1~5. 10(3개월 간)
- 조사대상 : 부천시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민간인 235명
- 조사방법 : 설문서 우편발송
- 설문서 발송결과
 - 우편발송 : 235명
 - 우편응답 : 55명
 - 반 송 : 19명
- 조사내용
 - 위원회 회의개최횟수, 전문성 여부
 - 위원회의 제정비 필요성 여부
 - 회의자료 교부시기
 - 위원회 의견의 시행정 반영 여부

조사결과

- 설문서응답현황
 - 응답대상인원 : 216명(발송인원 235명-반송 19명)
 - 응답인원 : 57명
 - 응답률 : 26.4%
- 문항별 응답결과

1. 귀하께서는 어느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_____ 3명, ○ 건축위원회 _____ 3명
 - 경제자문위원회 _____ 1명, ○ 공직자윤리위원회 _____ 1명
 - 교통정책심의위원회 _____ 1명, ○ 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 _____ 1명

- 농어촌발전심의회 3명, ○ 도로관리 1명
- 도시계획위원회 4명, ○ 모자복지위원회 1명
- 문화예술위원회 7명, ○ 물가대책위원회 2명
-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2명, ○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1명
- 보육위원회 3명, ○ 장학금심의위원회 1명
-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3명, ○ 여성위원회 2명
- 읍부즈만위원회 2명, ○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1명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1명, ○ 제2건국추진위원회 1명
- 지명위원회 1명, ○ 지방세심의위원회 7명
- 토지평가위원회 2명, ○ 무응답 2명

2.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는 지난 1년 간(98년도) 회의를 몇 회 개최하였습니까?

- ① 1회 14명(24.6%)
- ② 2회 13명(22.8%)
- ③ 3회 23명(40.3%)
- ④ 없음 4명(7.0%)
- ⑤ 모름 0명(0.0%)
- ⑥ 무응답 3명(5.3%)

3. 귀하께서 지난 1년 간(98년도) 회의참석 수당을 얼마나 지급받았습니까?

- ① 1회 50,000원 22명(38.6%)
- ② 2회 100,000원 5명(8.8%)
- ③ 3회 150,000원 9명(15.8%)
- ④ 4회 200,000원 3명(5.3%)
- ⑤ 5회 250,000원 2명(3.5%)
- ⑥ 6회 300,000원 1명(1.7%)
- ⑦ 8회 400,000원 1명(1.7%)
- ⑧ 무응답 14명(24.6%)

4. 귀하께서 소속된 위원회의 위원들은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 ① 전문성이 있다 49명(85.9%)
- ② 전문성이 전혀 없다 0명(0.0%)
- ③ 그저 그렇다 5명(8.8%)
- ④ 잘 모르겠다 1명(1.8%)
- ⑤ 무응답 2명(3.5%)

※ “전문성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응답내용

접수번호	응답내용	비고
18	분과별로 전문성이 적어 체계적인 집중지도를 못 함	
42	위원을 선임할 때에 너무 안이하게 선임하였음	

5. 귀하께서 소속된 위원회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16명(28.1%)
- ② 정비할 필요성이 없다 30명(54.4%)
- ③ 잘 모르겠다 6명(12.2%)
- ④ 무응답 3명(5.3%)

※ “정비할 경우 어떤 방향으로 정비를 했으면 하니까”에 대한 응답내용

접수번호	응답내용	비고
2	위원 수를 늘려야 함	
7	현재 개인택시와 사업택시 증차 비율 결정이 주요안건인데, 이외에도 교통정책 전반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함	
11	순수한 농민으로 정비	
12	위원 수를 늘리고 자격도 전문가만 위촉하지 말고 일반시민도 위촉하였으면 함	
13	타지역 교수는 학술적, 이론상 잘 알고 있을지 모르나 부천시 실정이나 현황을 모르므로 관내 전문가나 교수를 위촉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16	실질적인 전문가를 위촉하고 위원회를 정례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여야 함	
18	분업화하여 실질적인 지도와 교육이 필요	
20	확고한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들로 정비	
26	부시장, 환경국장, 언론계 등 업무과다로 인하여 거의 풀참하게 되는 위원은 위원 구성의 다양성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외부 전문가의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비되었으면 함	
27	농지관리위원으로서 범위가 너무 많아 정확성이 없음	
37	편견 없는 모임으로 정비	
42	보다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 재구성 전문분야별 소위원회가 있어야 한다고 봄	

6. 귀하께서 소속된 위원회가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존속할 필요성이 있다 50명(87.7%)
- ② 존속할 필요성이 없다 1명(1.8%)
- ③ 잘 모르겠다 4명(7.0%)
- ④ 무응답 2명(3.5%)

※ 위원회가 존속할 필요성이 없는 이유에 대한 응답내용

접수번호	응답내용	비고
37	특별한 활동이 없다고 생각함	

7.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귀하가 소속된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 ① 있다 5명(8.8%)
- ② 없다 27명(47.4%)
- ③ 잘 모르겠다 23명(40.3%)
- ④ 무응답 2명(3.5%)

8. 위원회 개최시 회의자료 등은 언제 받아 보십니까?

- ① 회의 전 37명(64.9%)
- ② 회의당일 16명(28.1%)
- ③ 회의 전 또는 회의당일 2명(3.5%)
- ④ 무응답 2명(3.5%)

9. 위원회가 설치목적대로 위원들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반영되고 있다 43명(75.4%)
- ②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0명(0.0%)
- ③ 그저 그렇다 8명(14.1%)
- ④ 잘모르겠다 4명(7.0%)
- ⑤ 무응답 2명(3.5%)

※ 위원들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내용

접수번호	응답내용	비고
12	• 시일을 촉박하게 개최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적으로 내부기준을 제시하여 거의 동의하는 형식으로 개최됨	

12	• 회의자료를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야 함	
13	• 도시계획의 경우 계획안을 확정해 놓은 상태에서 요식행위에 그 치고 있음	

10.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응 답 내 용	비 고
1	• 옴브즈만실 공무원수가 적음 • 옴브즈만실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이 바람직하지 않음	
4	• 회의자료를 회의 5일 전에 배부하여 사전 심의가 충분히 이루어 졌으면 함	
5	• 정기적인 위원회 회의가 필요	
7	• 교통정책 전반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8	• 공직자 윤리를 위한 연수기회 부여 바람	
10	• 거창한 명제보다 실질적인 제도개선 및 시민의 실익을 항상 염 두에 두고 활성화 방향을 정하기 바람	
11	• 익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서 농민과 토론이 바람직함	
12	• 시에서 미리 내정한 사안을 그저 통과의례만 치르는 형식상의 위원회가 아닌 위원회에서 토의하고 심의한 사항이 시행정에 반 영되는 체계가 되어야 하고 또 여러 여론을 수렴하여 부천시의 지역적인 여건에 맞는 행정을 집행하였으면 함	
18	• 회의횟수를 늘려 시에서 추진하는 방향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 하고 공무원들의 이론과 위원들의 경험을 접목하여 현실에 맞게 추진하였으면 함	

접수번호	응답내용	비고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에서 여러 의견이 수렴되기 위해서는 다중의 의견도 중요하나 위원회 위원 수는 12명 정도가 적당하며 현재 실질적 전문가라기보다는 지역원으로 구성되어 토의가 안 되고 있음. 이 분야의 현역 위주로 구성하였으면 함(문화예술위원회) • 전문성이 있는 위원회로 잘 되고 있음(건축심의위원회)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의 유사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보다 하나로 통합하여 다기능 복합위원회가 체계적으로 활동하기가 나을 것으로 판단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에 대하여 시의 의견을 1, 2, 3안 등으로 제시하여 사전에 통보하면 더욱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것임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를 분기별로 하는 것이 좋음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소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였으면 함. 예를 들면 문화상 수상자 결정에서 질보다 양을 보고 사전검토 없이 위원 24명 전원이 투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 결과에 대한 승인과정보다는 계획수립과정 중 의견수렴과정이 매우 중요함.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의견수렴과정에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에 대한 찬·반 거수만 하고 있음. 예산수립계획부터 참여, 경영에 직접참여와 책임을 지는 적극적인 위원회가 필요함 	
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시외 위상을 고려하여 심의수당을 인천시와 동일하게 책정 바람 • 위원회 개최일시를 미리 정례화해 놓으면 일정관리에 도움이 되겠음 • 사안별 위원회(건축위원회 등)와 별도로 장기 도시발전 구상 및 Monitoring을 위한 위원회가 병행되어야 함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인사가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됨 	

접수번호	응답내용	비고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전에 자료를 분석할 여유가 없음 • 현실성이 부족한 물가조사가 실질적인 조사과약이 필요 • 물가인상 때 회의가 필요하다면 인하요인이 발생할 때에도 대책위원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분야별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안에 따라 전문분야의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당해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할 필요가 절실함 	
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전체적 개발방향과 부합될 수 있게 건축심의위원회 안전과 교통정책위원회 안전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협의 심의 후 관련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이 적절한 토지이용계획에 맞는 균형있는 도시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함 	
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활동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제도적 지원장치를 마련하여 영세한 유망예술가 및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예술창작 공간의 확충 등 창작 환경조성에 노력하여 기업 등 민간의 자율적 체제 구축을 유도하는 위원회가 되길 바랍 	
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위원회와 연계하여 정보 및 교육을 통하여 부천시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면 함 	
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슨 위원회 소속인지 알 수 없음 • 어떤 경유로 위원이 되었는지 묻고 싶음 	
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를 자주 개최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면 함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 받은 설문서이므로 내용도 모르고 참석한 것도 없음 	
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주 만나 토론하고 현장조사, 시민의 소리, 외부소식, 직접 부딪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함 	
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능한 위원들을 모색 중임 	
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에 한 번 회의나 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이나 정책을 수행하는 데 같이 협력해 나가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함 	

접수번호	응답내용	비고
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들로 하여금 부천시 정책방향을 알 수 있도록 연계망을 구성하고 이를 시 당국은 활용해서 정책개선 및 입안의 초석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함 • 그리고 공무원들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하고, 각 위원회의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시 당국의 정책과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하여야 함 • 이는 부천시의 고충적인 부분의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될 뿐만 아니라 무사안일주의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해결책도 된다고 생각함 • 따라서 회의비 등을 위원들에게 줄 수도 있지만 부천시 일에 대해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면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면 그 의미가 매우 클 것임 	

□ 응답결과 분석

○ 총괄

-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인 235명에게 설문서를 발송한 결과 응답인원은 57명, 반송은 19명, 미응답인원은 159명으로 응답률은 26.4%이며 응답자 57명 중 2명은 무슨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여 각 문항별로 응답을 하지 못하였음.
- 응답자 중 문화예술위원회와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응답률이 가장 많았고 98년도에 3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응답한 위원이 23명으로 40.3%에 이르고 있으며 응답자 중 85.9%가 위원회의 위원들이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전문성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또한 위원회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위원이 16명으로 28.1%이며 위원회가 계속 존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자가 87.7%임.
- 소속된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있다고 응답한 위원은 5명으로 8.8%이며 회의개최시 회의자료는 회의 전에 받아본다고 응답한 위원은 37명으로 64.9%이고 위원회가 설치 목적대로 위원들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응답한 위원은 43명으로 75.4%임

○ 1번 문항

- 어느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문화예술위원회와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이 각각 7명씩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시계획위원회 4명, 건강생활실천협의회 3명, 보육위원회 3명,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3명, 건축위원회 3명이 응답을 하였음.
 - 또한 어느 위원회에 소속되었는지 모른다고 응답한 위원이 2명 있었으며 3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이 1명, 2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이 2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 2번 문항
-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의 98년도 회의개최 횟수에 대한 질문에 1회가 14명에 24.6%, 2회가 13명에 22.8%, 3회 이상이 23명에 40.3%로 나타났으나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위원이 4명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 3번 문항
- 회의참석 횟수 및 수당지급과 관련한 설문에는 8회 참석하여 40만원의 회의수당을 받은 위원이 가장 많은 회의참석 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1회 참석하였다고 응답한 위원은 22명으로 가장 많았음.
- 4번 문항
-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57명 중 49명이 전문성이 있다고 한 반면 전문성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위원은 한 명도 없었으며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위원은 5명이나 되었음.
- 5번 문항
- 소속 위원회의 재정비 필요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28.1%인 16명이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54.4%인 31명은 정비할 필요성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2.2%인 7명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음.
- 6번 문항
- 소속된 위원회가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87.7%인 50명이 존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존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응답한 위원은 1명뿐이었음.
- 7번 문항
-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귀하가 소속된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응답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위원이 각각 27명(47.4%), 23명(40.0%)이었으며 있다고 응답한 위원은 5명이었음.
- 8번 문항
- 위원회 개최시 회의자료 등은 언제 받아보느냐는 질문에는 64.9%인 37명이 회의 전날 받아본다고 응답한 반면에 28.1%인 16명은 회의당일에 받아본다고 응답하였고 회의 전 또는 회의당일에

받아본다고 응답한 위원도 2명이 있었음.

○ 9번 문항

- 위원회가 설치목적대로 위원들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5.4%인 43명은 반영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14.1%인 8명은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7.0%인 4명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음. 또한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위원은 한 명도 없었음.

○ 10번 문항

- 설문에 응답한 위원들이 제시한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으로는
- 회의자료를 회의개최 3일 전에 위원들에게 배부하고 시의 의견을 1, 2, 3안 등으로 제시하여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충분히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 회의 진행방식도 시에서 미리 결정한 사안을 그저 통과만 시키는 형식상의 위원회 회의가 아닌 위원회에서 토의하고 심의한 사항이 시 행정에 반영되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며
- 회의횟수를 늘리거나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여러 여론을 수렴하여 위원회를 활성화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음.
- 또한 다수의 유사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보다 이를 통합하여 다기능 복합위원회로 운영하고 전문분야별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안에 따라 전문분야의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당해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고
- 위원들이 부천시 행정에 대해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면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점

○ 위원회 운영의 경직성 및 형식화

- 위원회 운영에 대한 위원들의 주요 불만사항으로는 시에서 미리 결정한 사항을 통과시키는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으며 회의자료를 회의당일에 배부함으로써 심의사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없다는 것임.

○ 위원의 전문성 및 현실성 부족

- 위원들의 전문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문성이 없다고 응답한 위원은 한 명도 없었으나 위원회 재정비 방향에 대한 응답내용을 살펴보면 전문성 있는 위원으로 재구성하거나 위원회 안에 전문분과 또는 소위원회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또한 부천시의 실정이나 현황을 잘 아는 관내 전문가, 교수를 위촉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 유사 위원회 중복 운영

-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응답한 위원이 5명 있었는데 바 문화예술위원회와 지명위원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와 농지관리위원회 등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위원의 소속감 결여

-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는 건축위원회와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을 제외하고 연 1회 또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어 위원회에 대한 소속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어떤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모른다고 응답한 위원도 있었음.

○ 위원 수의 적정성 문제

- 위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위원이 있는가 하면 위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위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서 적정수의 위원을 위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위원회 개선방안(방향)

○ 전문성 있는 위원 위촉

- 현재 각 위원회별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 중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부천시 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위원은 전문성이 있는 관내 전문가로 위촉하는 등 위원 재정비가 필요함.

○ 위원 수의 적정 도모

-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위원 수를 늘리거나 줄여서 위원 수를 적정하게 위촉하여 탄력있게 위원회를 운영해야 함.

○ 유사 위원회 통합 및 분야별 통합 운영

- 건축심의위원회와 지방세심의위원회, 불가대책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는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운영하도록 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나 연 1~2회 정도 회의를 개최하는 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기획, 문화예술, 재정, 복지, 지역경제 등의 분야별 통합위원회 또는 다기능 복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위원회 운영 내실화

- 위원회 회의시 사전(2~3일)에 회의자료를 배부하여 참석하는 위원들이 심의 안전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안전검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미리 결정한 사안을 통과시키는 운영의 형식화를 배제하고 의안에 대하여 시의 의견을 1, 2, 3안 등으로 제시하여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해야 함.

○ 위원회의 기능별 전문화 도모

- 전문분야별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안에 따라 전문분야의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당해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는 위원회 운영이 필요함.

○ 위원회 회의의 정례화

- 위원회 회의를 분기별 또는 개최일시를 정례화하여 위원들의 부천시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위원들로 하여금 부천시의 정책방향을 알 수 있도록 연계망을 구성하여 의

건을 수렴하고 시에서 이를 활용함으로써 정책개선 및 입안의 초석으로 삼아야 할 것임